

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



2013. 6. 24

국 토 교 통 부
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(주)

변경 실시 협약

국토교통부장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.)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.)는 2008년 10월 31일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이라 한다.)을 체결하였으며,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(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250호, ‘10.12.23)에 따라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하며, 실시협약에 포함된다.)을 체결한다.

제1조(정의)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2조(해지시지급금 산정) 실시협약 제63조제①항의 [별표 12](해지시지급금)을 이 변경실시협약의 [별표 1](해지시지급금)으로 변경하며, 실시협약 제63조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2 (해지시지급금)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.	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<변경실시협약 별표1> (해지시지급금)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.

제3조(실시협약의 효력변경) 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이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4조(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) ① 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료 하여금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6월 24일

대한민국
국토교통부장관 서



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식회사
대표이사 박공래

